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33

발의연월일: 2021. 7. 22.

발 의 자:이원택・이상헌・백혜련

이규민・최종윤・김승원

송재호 · 이소영 · 장경태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된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 확인,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렵고, 비료의 시비(施肥)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물생장의 촉진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살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및 생활환경이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당 비료의 공급 시에 비료생산업자 등으로 하여금 작물별 시비한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행위,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의 오염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및 제19조의2제3항·제5항 신설 등).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사용일자"를 "사용일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생산 업자등이 신고한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그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서 비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별 시비(施肥)한도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의 오염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제2항을"을 "제14조제3항을"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제14조제2항제3호에"를 "제14조제3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9조의2제3항에"를 "제19조의2제4항에"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제1호"를 "제1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4조제2항제8호에"를 "제14조제3항제8호에"로 한다.

제30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의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작물별 시비한도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한 자

제31조제2항 중 "제14조제3항을"을 "제14조제4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 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 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 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 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 · 신고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 장・군수・구청장 및 비료의 공 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 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②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신 설> -----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비료생산업자등이 신고한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그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서 비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 으로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u>③</u>·<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 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 을 하지 아니한 비료를 공급하 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별 시비(施肥)한도 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8. <u>제14조제2항을</u> 위반한 경우
- 9. ~ 11. (생략)
- ②・③ (생 략)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倂科)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5. <u>제14조제2항제3호에</u> 해당하

<u>위, 세2양 및 세4양에 따른 생</u>
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
수역의 오염 또는 오염될 우려
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u>.</u>
<u>.</u>
1. ~ 7. (현행과 같음)
8. <u>제14조제3항을</u>
9.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4조제3항제3호에</u>

- 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 ·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 6. ~ 8. (생략)
- 9. <u>제19조의2제3항에</u>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10. 11. (생략)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14조제2항제1호</u> ·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생략)
 - 4. <u>제14조제2항제8호에</u> 따른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한 자5. (생략)
-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2. (생략) <신설>

6. ~ 8. (현행과 같음)
9. <u>제19</u> 조의2제4항에
10.•11.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u>_</u>
· 1. (현행과 같음)
2. <u>제14조제3항제1호</u>
3. (현행과 같음)
4. <u>제14조제3항제8호에</u>
5.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u></u>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시료 채취를 거부하거나 방
기프 세치를 기구에기다 경

<신 설>

- 3.·4.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한 자
2의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작물별 시비한도량을 초
과하여 비료를 공급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제4항을